

검정기관 []지정 []지정 갱신 신청서

* []란에 V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60일
신청인	기관명		
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/사업자등록번호)	
	주소	전화번호	
실험실 소재지			전화번호
업무 범위	분야	[] 품위·품종·일반성분 검정	[] 무기성분·유해물질 검정
	구분	[]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[] 농지(토양) [] 용수(하천수·호소수) [] 용수(먹는물·먹는샘물) [] 자재(비료·축분·깎짚 등)	
	검정항목	[] 품위 [] 발아율 [] 도정률 [] 품종 [] 일반성분	[] 무기성분 [] 유해 중금속 [] 잔류농약 [] 곰팡이 독소 [] 항생물질 [] 방사능 [] 병원성 미생물

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99조제2항·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1항, 제13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[]검정기관 지정 [] 검정기관 지정 갱신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

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

신청인(대표자) 첨부서류 (지정신청 시)	1. 정관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 2. 검정 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및 검정 업무에 관한 규정 각 1부 3.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29조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	수수료 (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39조에 따른 수수료)
신청인(대표자) 첨부서류 (갱신신청 시)	1. 검정기관 지정서 원본 2. 지정신청 시 첨부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 각 1부	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, 사업자등록증명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